

1. 개정이유

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중 실습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습한 경우, 780시간 실습교육과정 중 30% (234시간)한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(안 제4조제2항 신설)
- 1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‘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’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실습교육 인정(필수 이수해야하는 780시간 이상 실습교육과정 중 234시간 이내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제2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중 30%까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제2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 중 30%까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제1항 및 제2항에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 -----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